

발간등록번호

한사협-2017-10-013

2017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017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사업회에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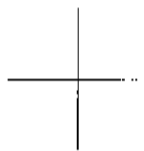
※ 법령개정 등으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본부: 02-786-0845 (lic.welfare.net)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 3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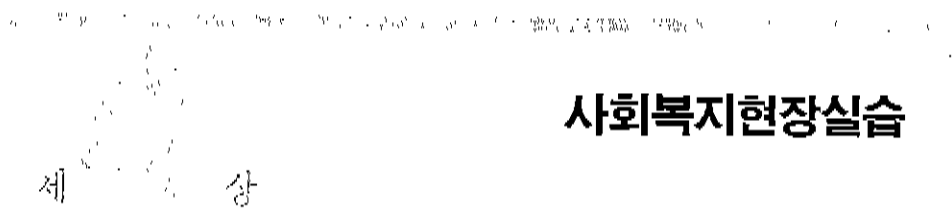


목 차

제1장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1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1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	2
제2장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4
제1절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	4
제2절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5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교과목	18
제1절 이수과목 수	18
제2절 이수과목 내용	19
제4장 사회복지현장실습	21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21
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25

제5장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28
제1절 제도 연혁	28
제2절 시험 관리기관	28
제3절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28
제4절 시험과목 및 문항수(배점)	30
제5절 합격자 결정	30
제6절 기타사항	30
제6장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31
제1절 목적	31
제2절 교육과정	31
제7장 자격증 발급	32
제1절 자격증 발급업무 흐름도	32
제2절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32
제3절 자격증 발급	33
■ 각종 서식	39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43
■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53





사회복지현장실습

제1절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 법적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실습시간 기준: 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방식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 적정 실습비: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
-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할 수 없음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1회기(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기준 5인 이내로 하며,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지도교수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권고함
 - ① 석사학위 소지자: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 ②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습지도 진입교수를 채용하여 가능한 한 전임교수가 실습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함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실습지도 인원:** 한 학기당 40인 이내,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6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권고함
- **신원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실습교육매뉴얼(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간)', '사회복지학 교과복지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등을 참고해 실습생을 선발할 것을 권고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
 -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 ②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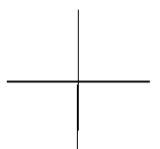
※ 실습계획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상 기준을 넘기는 실습시간 등은 실습생, 실습기관, 학교(교육기관)가 상의하여 실습계약과 실습계획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상의하여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심사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에 대한 법정기준 미충족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학교(교육기관)측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과 변경임)**

□ 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번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실습확인서 양식은 실습을 이수한 해당연도 이전 양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확인 날짜는 재발급 받은 날짜로 작성(양식은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관폐쇄로 인한 실습확인서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학교(교육기관)측이 소장한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사본을 원본대조필 받아 제출(원본대조필은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 실습지도자나 실습지도교수의 부재(사망, 퇴사 등)로 인한 서명 확인 불가능 시, 실제 지도받은 이의 성함을 명시하고, 서명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 서명
 - ① 실습지도자 부재시, 기관대표자 또는 현행 실습지도자가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서명자 이름과 함께 서명자 개인도장 날인
 - ② 실습지도교수 부재시, 학과장이 대리 서명하고, 대리 서명한 곳 옆에 대리 서명 사유를 자필로 명시한 뒤 학과장 직인(개인도장은 인정 안 됨) 날인
 - 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 서명은 모두 확인돼야 함(복사하거나 스캔 받아 인쇄한 서류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본제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 ① 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기관 직인이 모두 있어야 인정
 - ② 학교(교육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을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사본 제출에 대한 사유, 해당사무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학과장 직인(개인

도장은 인정 안 됨)이 모두 있어야 인정

-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확인서는 전·후 지도자에게 각각 확인받아야 함(총2장이 상)
 - 군인, 공익근무요원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 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아래의 기관에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은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단체 등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행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에 등록된 기관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시 등록심사요건에 준하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2절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 시행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시행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석기준에 충족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정보제공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 등록내용: 법적 요건(실습시간,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계획, 실습비, 실습지도인원 등
 - ※ 사회복지현장실습 고시 제정을 통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 의무화 시행 예정
- 기관등록시 첨부서류
 - ① 시설신고증(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 ② 실습지도자 경력·제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③ 실습계획서(실습총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실습기관 등록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 ②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정의'를 말함
-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 안건번호 15-0247, 회신일자 2015.06.23.
- *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 이유(요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 된 상태여야 함. 설치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 불가. 심사 시 정관, 실습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습지도자 등록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 된 법인·시·시청,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상근한 경력
 -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직종은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내 열린광장에서 확인 가능
 - ※ 시설신고증,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정관 등을 통해 심사함
 - ※ 실습지도자의 경우 상근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직위가 대표일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 관련문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807(2014.11.18.)
- *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발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 경험만을 의미
- * 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434판결례 참조

□ 참고사항

- 등록내용과 달리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실습기관 등록 취소,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 진행

